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 
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1조의2)

나.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3조 중 “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위원회·실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”으로, “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규정”을 “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여비를”을 “여비 등을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~ ⑤ (생략)

#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 신설되는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으로 세출 발생(안 제21조의2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## 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 신설되는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내역	금액
실무위원회 위원 수당	100,000원×10명×4회	4,000

※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: 70,000원(기본) + 30,000원(2시간이상 초과)

## 4. 작성자

-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리계 박진석 (054-480-4935)

소 관 부 서		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
입 안 자	관 장	이 연 희
	담 당	윤 희 정
	담 당 자	박 진 석 (480-4935)